

##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 보고서

2001. 9. 18.  
총무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9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9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1. 9. 18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재형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현재 사용중인 현청사는 건립한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며, 청사가 본관 건물외 제3별관으로 분리되어 있어,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, 깨끗한 환경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, 마포구 성산동 369-1외 53필지 (자동차검사장 제1검사장 부지 : 교통안전공단)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.

### - 재산의 표시
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 (백만원)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	비 고
	지목	소재지	면적(m <sup>2</sup> )					
1	전 집	성산동 369-1외 53필지	16,529	19,250	2001년도 하반기	구청사 부지매입	교통안전공단 구로구 궁동 189	일반 회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

#### <주요내용>

- 구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산동 369-1외 53필지인 교통안전공단 소유의 자동차 제1검사장 부지로 지목은 전과 잡종지 16,529m<sup>2</sup> (약 5,000坪)가 되겠으며 취득 추정가액은 192억 5천만원이며 평당 취득가액은 약 385만원으로 주변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약 574만원 내지 686만원과 비교하면 동 재산의 취득가액은 주변지역의 토지시가 보다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.

#### <검토의견>

-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현청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막대한 수선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본관 건물외에도 제3별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건물 구조상으로도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 부지를 주변시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현대식 종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,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773억 5천만원이 소요될 총사업비

의 재원확보 방안과 자연녹지지역인 동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가능한지 또한 지하철6호선을 비롯한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인한 주변의 대중교통수단은 확대되어 신청사를 방문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청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동 재산의 부지매입비중 77억 3천만원은 본 회기중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질의요지(윤한호 위원) : 청사 부지매입 대상지의 위치와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은?
- 답변요지(이은규 총무과장) : 현 청사는 23년이 지난 건물로서 부지매입 후 준공까지는 7년이 걸리므로 현 청사를 30년 사용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소유의 자연녹지인 매입대상 부지는 인근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며, 위치는 외곽지역이기는 하지만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여 현 위치와 비교할 때 구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만은 못하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평당 385만원의 추정가액은?
- 답변요지(이은규 총무과장) : 교통안전공단 자체 감정가액이나 매입시에는 감정가격으로 할 것임.
-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자연녹지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과 예산확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?
- 답변요지(이은규 총무과장) : 이 지역을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녹지지역은 해제되어야 할 것이며, 투자심사도 관련 부서에서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없을 것임.
-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구민회관 건립비는?
- 답변요지(이은규 총무과장) : 460억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: 2001. 8.  
제출자: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현재 사용중인 현청사는 건립한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며, 청사가 본관 건물외 제3별관으로 분리되어 있어,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, 깨끗한 환경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, 마포구 성산동 369-1외 53필지 (자동차검사장 제1검사장 부지 : 교통안전공단)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.

일련 번호	재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 원)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, 성 명	비고
	지 목	소재지	면적(m <sup>2</sup> )					
1	전 집	마포구 성산동 369-1외 53필지	16,529.0	19,250,000	2001년도 하반기	구청사 부지매입	○ 교통안전공단 구로구 궁동 189	일반 회계

### 3. 근 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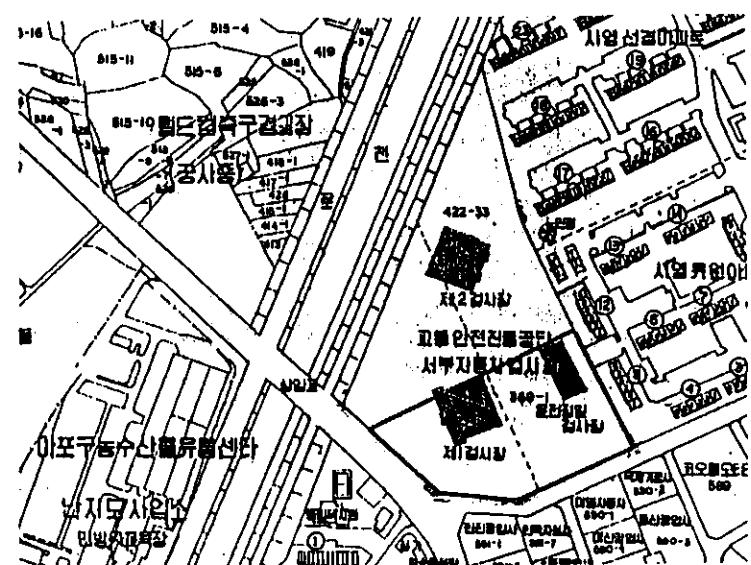
- 지방재정법(2000.1.12 법률 제6113호) 제77조
- 지방자치법(2000.1.12 법률 제6115호) 제35조제1항제6호
- 지방재정법시행령(2000. 10. 20 대통령령 제16983호) 제84조제2항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(2000.1.13 조례 제450호) 제36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(1999.11.10 규칙 제314호) 제29조

## 위치도 및 현황도

## 위치도

대상토지  
-성산동 369-1외  
53필지

매수신청지  
총 24,793.5㎡ 중  
16,529㎡



## 위치도

대상토지  
-성산동 369-1외  
53필지

매수신청자  
총 24,793.5㎡ 중  
16,529㎡

